

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07.4.12>

재결신청 등의 수수료(제9조제1항관련)

납 부 의 무 자	수 수 료
1.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자	5만원
2.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	가.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: 1만원 나.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: 2만원 다. 보상예정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: 3만원 라. 보상예정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: 4만원 마. 보상예정액이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: 6만원 바. 보상예정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: 8만원 사. 보상예정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10만원
3. 삭제 <2007.4.12>	